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129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4. 09. 03.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977	김용호 의원	'24.8.14.	상정 · 심사	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9.3.)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33	김영철 의원	'24.8.14.	상정 · 심사	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('24.9.3.)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자 함.
-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,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함(안 제6조제3항)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, 이를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단서를 신설함(안 제11조제1항제10호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110”을 “120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·②(생략)</p> <p>③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,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<u>110</u>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</p> <p>①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 <단서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20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</p> <p>①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